

2021년도 제3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1. 8.(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30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550건(안건번호 제2021-153926호~15459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53926호는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한 점, 우리 심의위원회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153927호~153961호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
는바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53962호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는 게시물인바
시정권고 가결함.
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436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19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30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4쪽 커뮤니티 사이트명, 게시판명, 게시물 제목, 5쪽 커뮤니티 사이트명, 원게시물 작성자명, 10쪽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명 등 민원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비식별 처리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
- 참석 위원 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에도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원안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4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55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1-153926호~154592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53926호는 민원인이 특정 제품을 촬영한 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사진을  입점사인 의 판매자가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안임.
민원인이 작성한 원게시물은 해당 제품의 사용 후기글로, 민원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 16장과 영상 2개를 포함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 중 4장의 사진을 이용 중임.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5392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특정 제품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한 기존 판례는

어떠한지?

- 강나래 전문위원: 대법원은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제품 사진'과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투영된 '이미지 사진'으로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저작물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B 위원: 저작물성 판단의 핵심이 되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 여부에 대하여서는 법원 판단의 영역으로 심의위원회가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임.
- C 위원: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가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더불어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고 시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미치는 영향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임.
- D 위원: 의원님 의견에 동의함. 심의위원회는 기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기존 사례에서 우리 심의위원회는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정을 권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논의를 한 바 있음.
- A 위원: 해당 사안은 기존 사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의위원회의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해당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15396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D 위원: 토렌트 파일의 전송은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임이 인정됨. 시정권고 가결함이 타당함.
 - B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일관되게 가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A 위원, C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53962호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53963호~154592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영상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아미 오브 더 데드:도둑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54038호는 2021. 10. 29.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380캐시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방송 '오징어 게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1-154524호는 2021. 9. 17.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콘텐츠임.

(컴퓨터 프로그램 'SketchUp Pro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54572호는 SketchUp Pro 2020의 자동인증 버전을 30포인트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게시물 본문에서 설치 방법 및 크랙 프로그램 설치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은 2020. 10. 1.부터 영구버전은 판매하지 않고 연간 구독 제품만 판매하는 것으로 연간 360,000원에 이용 가능함.

해당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153963호~15459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53963호~154592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53926호는 부결하고, 제2021-153927호~15459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3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3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1. 15.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